##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

제정 2024.04.30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21호 개정 2024.06.28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32호 개정 2024.10.04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42호 개정 2024.12.05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4-43호 개정 2025.02.18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5호 개정 2025.05.26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8호 개정 2025.09.12.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-23호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, 유독물질 해당 여부 등 유해성심사결과를 고시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유해성심사결과) 유해성심사를 마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 과는 별표와 같다.

## 부 칙(2024.04.30.)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4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(다른 고시의 폐지)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「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77호)」는 폐지한다.

## 부 칙(2024.06.28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10.04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4.12.05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2.18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5.26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5.09.12.)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